

자격규정 시행세칙 일부변경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모래놀이상담사, 아동심리놀이상담사, 부모놀이상담사 자격의 질적 발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자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020. 6.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격규정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놀이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중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모래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제3장 자격시험

구분	기존	변경 후
제9조 (자격시험 합격 및 유효기간)	1. 자격구분 없이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모래놀이상담사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위 급수에서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자격구분 없이 각 응시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응시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모래놀이상담사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위 급수에서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4장 자격심사

구분	기존	변경 후
제12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 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심사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 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심사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며, 구술면접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심사 청구) 2. 모래놀이상담사1급	2. 모래놀이상담사1급 -중략- 10) 사례보고서 11) 상징페이퍼	2. 모래놀이상담사1급 -중략- 10) 사례보고서 및 최종통과 확인서 각 1부 11) 상징페이퍼 및 최종통과

		<p>확인서 각 1부</p> <p>12) 사례보고서 및 상징페이퍼 내담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 1부</p> <p>12) 사례보고서 및 상징페이퍼에 사례가 인용된 경우 내담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 1부</p>
--	--	---

[모래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제5장 수련과정 및 내용

제14조 (수련과정)

구분	기존	변경 후
1. 자격 급수에 따른 수련과정 및 내용 (표)	<p>수퍼비전</p> <p>모래놀이상담사1급</p> <p>모래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수퍼비전 30시간 면제</p>	<p>수퍼비전</p> <p>모래놀이상담사1급</p> <p>모래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수퍼비전 30시간(개별15/집단15) 면제</p>
	<p>교육분석</p> <p>모래놀이상담사1·2급</p> <p>아동심리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p>	<p>교육분석</p> <p>모래놀이상담사1·2급</p> <p>아동심리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p>
	<p>심리평가 회의</p> <p>모래놀이상담사1·2급</p> <p>아동심리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p>	<p>심리평가 회의</p> <p>모래놀이상담사1·2급</p> <p>아동심리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p>
	<p>공개사례회의</p> <p>모래놀이상담사1·2급</p> <p>아동심리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p>	<p>공개사례회의</p> <p>모래놀이상담사1·2급</p> <p>아동심리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 (단, 공개사례회의 참석만 해당함)</p>
5. 모래놀이상담 이론 워크숍	1) 하위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워크숍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워크숍 시간에 포함된다.	1) 하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론 워크숍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워크숍 시간에 포함된다. 단, 동일한 자격 내 승급에서만 가능하다.
6. 모래놀이상담 수퍼비전	신설	3) 수련생 본인의 사례발표를 3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온라인 수퍼비전을 일부 실시할 수 있다.
7. 교육분석	-중략- 2) 본 학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	-중략- 2) 본 학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

	사 취득 시 이수한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8. 심리평가회의	2) 본 학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한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 또는 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9. 공개사례회의	-중략- 2) 본 학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한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모래놀이상담사1급 취득의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1회 이상 발표를 해야 한다.	-중략- 2) 모래놀이상담사1급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모래놀이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3) 본 학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 또는 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개사례회의 참석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공개사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1. 사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중략- 4) 모래놀이상담사는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보고서에 대한 내담자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련생에게 있다. 5) 사례보고서는 본 학회 모래놀이상담전문가 2인에게 각 1회 이상 컨설팅을 받은 사례보고서이어야 한다. 사례보고서 컨설팅은 개별 수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 6) 사례보고서 작성방식 및 내용은 학회소정양식을 따른다. 7) 조건부 합격인 경우 사례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사례보고서를 본 학회 소속 모래놀이상담전문가 또는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ISST) 공인 모래놀이상담전문가 1인에게 최소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 시 최종 사례보고서에 대한 모래놀이상담전문가의 최종통과 확인서를 받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례보고서 컨설팅은 개별 수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 -중략- 4) 모래놀이상담사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내담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포함)에게 안내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아 이를 학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련생에게 있다.

	8) 최종 불합격의 경우 새로운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5) 사례보고서 작성방식 및 내용은 학회소정양식을 따른다. 6)-8) 삭제
12. 상징페이퍼 작성 및 제출	<p>1)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상징페이퍼를 제출하여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p> <p>3) 임상 내용 포함 시, 모래놀이상담사는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임상내용에 대한 내담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련생에게 있다.</p> <p>4) 자격심사를 위해 상징페이퍼를 제출하기에 앞서 본 학회 모래놀이상담전문가 2인에게 각 1회 이상 컨설팅을 받은 상징페이퍼이어야 한다.</p>	<p>1)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상징페이퍼를 학회 소속 모래놀이상담전문가 또는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ISST) 공인 모래놀이상담전문가 1인에게 최소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 시 최종 상징페이퍼에 대한 모래놀이상담전문가의 최종통과 확인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징페이퍼 컨설팅은 개별 수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p> <p>3) 상징페이퍼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내담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 이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련생에게 있다.</p> <p>4) 삭제</p>
13. 온라인 수련과정	신설	<p>1) 모래놀이상담사 이론 워크샵의 온라인 강의시간은 모래놀이상담사 1급 최대 20시간, 모래놀이상담사 2·3급 최대 14시간을 인정한다.</p> <p>2) 모래놀이상담사 수퍼비전의 온라인 강의시간은 모래놀이상담사 1급 최대 50시간(개별 15시간/ 집단 35시간), 모래놀이상담사 2급 최대 18시간(개별 9시간/ 집단 9시간)을 인정한다.</p> <p>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와 공개사례회의는 각 급수에 해당하는 만큼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수시간을 수련과정으로 인정한다.</p> <p>4) 모든 온라인 수련과정은 학회에 사전 고지 및 등록된 것만 인정한다.</p>

제6장 자격증 발급과 갱신 및 정지

구분	기존	변경 후
제15조 (자격증 발급)	-중략- 3. 자격증은 윤리교육을 이수 후 수여한다.	-중략- 3. 자격증은 윤리교육을 이수 후 수여하며, 윤리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자격증의 유지 및 갱신)	-중략- 4. 본 학회 공개사례회의에서 사례발표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3급 제외).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5년 중 3일 이상 참석해야 한다.	-중략- 4. 자격갱신(3급 제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모래놀이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5년 중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회는 1년 중 1일이며, 1일에 진행되는 학술대회 전체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제3장 자격시험

구분	기존	변경 후
제9조 (자격시험 합격 및 유효기간)	1. 자격구분 없이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위 급수에서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 자격구분 없이 각 응시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응시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위 급수에서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4장 자격심사

구분	기존	변경 후
제12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구술면 접으로 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심사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구술면 접으로 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심사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며, 구술면접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심사 청구)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중략- 10) 사례보고서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중략- 10) 사례보고서 사본 및 사례보고서 최종통과 확인서 각 1부 11) 사례보고서에 사례가 인용된 경우 내담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 1부

제5장 수련과정 및 내용

제14조 (수련과정)

구분	기존	변경 후
1. 자격 급수에 따른 수련과정 및 내용 (표)	수퍼비전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수퍼비전 20시간 면제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수퍼비전20시간(개별10/집단10) 면제
	교육분석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모래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	모래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
	심리평가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
	공개사례회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 (단, 공개사례회의 참석만 해당함)
5.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숍	-중략-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또는 3급)와 모래놀이상담사(1급 또는 2급) 중복 취득자의 경우 이수시간이 많은 쪽으로 인정	1) 하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론 워크숍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워크숍 시간에 포함된다. 단, 동일한 자격 내 승급에서만 가능

	한다(최대 70시간 면제). 4) 이론 워크샵은 정기 및 부정기로 실시할 수 있다.	하다. 2) 모래놀이상담사(1급 또는 2급) 취득자의 경우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시간의 1/2이 면제된다. 단, 1)항목과 중복될 수 없다. 3) 이론 워크샵은 정기 및 부정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일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아동심리놀이상담 수퍼비전	신설	3) 수련생 본인의 사례발표를 3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온라인 수퍼비전을 일부 실시할 수 있다.
7. 교육분석	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한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8. 심리평가회의	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한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또는 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9. 공개사례회의	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한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취득의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1회 이상 발표를 해야 한다.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놀이사례로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3)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또는 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개사례회의 참석 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심리평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1. 사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3)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아동심리놀이상담사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내담자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익명성을 보	1)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사례보고서를 본 학회 소속 아동심리놀이상담전문가 1인에게 최소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 시 최종 사례보고서에 대한 아동심리놀이상담전문가의 최종통과 확인서를

	<p>장해야 한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련생에게 있다.</p>	<p>받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례보고서 컨설팅은 개별 수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p> <p>3)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아동심리놀이상담사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내담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련생에게 있다. 사례보고서 제출 시 내담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5))-8) 삭제</p>
<p>12. 온라인 수련과정</p>	<p>신설</p>	<p>1)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이론 워크샵의 온라인 강의시간은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최대 50시간, 아동심리놀이상담사 2·3급 최대 35시간을 인정한다(놀이치료 이론은 최대 20시간임).</p> <p>2)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온라인 수퍼비전은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최대 20시간(개별 10시간/ 집단 10시간), 아동심리놀이상담사 2급 최대 10시간(개별 5시간/ 집단 5시간)을 인정한다.</p> <p>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와 공개사례회의는 각 급수에 해당하는 만큼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수시간을 수련과정으로 인정한다.</p> <p>4) 모든 온라인 수련과정은 학회에 사전 고지 및 등록된 것만 인정한다.</p>

제5장 수련과정 및 내용

구분	기준	변경 후
----	----	------

제15조 (자격증 발급)	-중략- 3. 자격증은 윤리교육을 이수 후 수여한다.	-중략- 3. 자격증은 윤리교육을 이수 후 수여하며, 윤리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증의 유지 및 갱신)	4. 본 -중략-학회 공개사례회의에서 사례발표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3급 제외).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5년 중 3일 이상 참석해야 한다.	-중략- 4. 자격갱신(3급 제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놀이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5년 중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회는 1년 중 1일이며, 1일에 진행되는 학술대회 전체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7조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의 정지 및 회복)	2.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아동심리놀이상담전문가의 모든 교육과 지도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아동심리놀이상담전문가의 모든 수련과정과 지도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모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제3장 자격시험

구분	기존	변경 후
제9조 (자격시험 합격 및 유효기간)	2.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부모놀이상담사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위 급수에서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자격구분 없이 각 응시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응시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부모놀이상담사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위 급수에서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4장 자격심사

구분	기존	변경 후
제12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 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심사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 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심사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며, 구술면접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심사 청구)	<p>1. 부모놀이상담전문가</p> <p>1) 부모놀이상담전문가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부모놀이상담1급 자격증 사본</p> <p>3)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p> <p>4) 최종학력 증명서</p> <p>5) 임상수련시간 확인서</p> <p>6) 학회지 게재 논문 사본</p> <p>2. 부모놀이상담사1급</p> <p>1) 부모놀이상담사1급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p> <p>3) 최종학력 증명서</p> <p>4) 부모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p> <p>5) 부모놀이상담 수퍼비전 이수증 사본</p> <p>6) 심리평가회의 참석 확인서</p> <p>7) 공개사례회의 참석 및 발표 확인서</p> <p>8) 임상수련시간 확인서</p>	<p>1. 부모놀이상담전문가</p> <p>1) 부모놀이상담전문가 자격심사 응시원서 1부</p> <p>2) 부모놀이상담1급 자격증 사본 1부</p> <p>3)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 1부</p> <p>4) 최종학력 증명서 1부</p> <p>5) 임상수련시간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부</p> <p>6) 학회지 게재 논문 사본 1부</p> <p>7) 공개사례회의 발표 확인서</p> <p>2. 부모놀이상담사1급</p> <p>1) 부모놀이상담사1급 자격심사 응시원서 1부</p> <p>2)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 1부</p> <p>3) 최종학력 증명서 1부</p> <p>4) 부모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p> <p>5) 부모놀이상담 수퍼비전 이수증 사본</p> <p>6) 심리평가회의 참석 확인서</p> <p>7) 공개사례회의 참석 확인서</p> <p>8) 임상수련시간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부</p>

제5장 수련과정 및 내용

제14조 (수련과정)

구분	기존	변경 후
1. 자격 급수에 따른 수련과정 및 내용 (표)	<p>이론 워크샵</p> <p>부모놀이상담사1·2·3급</p> <p>※ 모래놀이상담사1·2급/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취득자는 부모놀이상담 이론 워크샵의 1/2시간이 면제됨</p>	<p>※ 모래놀이상담사(1·2급) 또는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중복 취득자는 부모놀이상담 이론 워크샵의 1/2시간이 면제되며, 한 가지 경우만 인정함</p>

	<p>심리평가회의 부모놀이상담사1·2급 모래놀이상담사/아동심리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p>	<p>모래놀이상담사(1·2급) 또는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p>
	<p>공개사례회의 부모놀이상담사1·2급 모래놀이상담사/아동심리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p>	<p>부모놀이상담전문가 1사례 이상 발표</p> <p>부모놀이상담사1·2급 모래놀이상담사(1·2급) 또는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p>
5. 부모놀이상담 이론 워크숍	<p>2) 모래놀이상담사(1·2급),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 취득자의 경우 부모놀이상담 이론 워크숍 시간의 1/2이 면제된다. 3) 이론 워크숍은 정기 및 부정기로 실시할 수 있다.</p>	<p>1) 하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론 워크숍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워크숍 시간에 포함된다. 단, 동일한 자격 내 승급에서만 가능하다. 2) 모래놀이상담사(1·2급) 또는 아동심리놀이상담사(1·2급)를 중복 취득한 경우 부모놀이상담사 이론 워크숍 시간의 1/2이 면제된다. 단, 1)항목과 중복될 수 없다. 3) 이론 워크숍은 정기 및 부정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일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p>
6. 부모놀이상담 수퍼비전	신설	<p>3) 수련생 본인의 사례발표를 3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온라인 수퍼비전을 일부 실시할 수 있다.</p>
7. 심리평가회의	신설	<p>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p>
8. 공개사례회의	<p>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취득 시 이수한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부모놀이상담사1급 취득의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1회 이상 발표를 해야 한다.</p>	<p>2) 부모놀이상담전문가를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놀이사례로 공개사례회의에서 1회 이상 발표를 해야 한다. 3)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또는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개사례회의의 참석 시간</p>

		만 인정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공개사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0. 온라인 수련과정	신설	1) 부모놀이상담사 이론 워크샵의 온라인 강의시간은 부모놀이상담사 1급 최대 35시간, 부모놀이상담사 2·3급 최대 20시간을 인정한다. 2) 부모놀이상담사 온라인 수퍼비전은 부모놀이상담사 1급 최대 15시간, 부모놀이상담사 2급 최대 7.5시간을 인정한다. 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와 공개사례회의는 각 급수에 해당하는 만큼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수시간을 수련과정으로 인정한다. 4) 모든 온라인 수련과정은 학회에 사전 고지 및 등록된 것만 인정한다.

제6장 자격증 발급과 갱신 및 정지

구분	기존	변경 후
제15조 (자격증 발급)	3. 자격증은 윤리교육을 이수 후 수여한다.	3. 자격증은 윤리교육을 이수 후 수여한다. 윤리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증의 유지 및 갱신)	4. 본 학회 공개사례회의에서 사례발표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3급 제외).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5년 중 3일 이상 참석해야 한다.	4. 본 학회 부모놀이상담사 자격 갱신(3급 제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놀이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5년 중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회는 1년 중 1일이며, 1일은 금일 학술대회 전체 참석을 의미한다.
제17조 (부모놀이상담사 자격의 정지 및 회복)	2.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아동심리놀이상담전문가의 모든 교육과 지도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아동심리놀이상담전문가의 모든 수련과정과 지도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